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Por.3/2564 호

투자촉진에 대한 권리와 혜택을 받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에 대한 조건 규정 설정

---

투자촉진을 받는자들의 연례 성과 보고서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전달에 있어 반복되는 서류제출 작업에 대한 불편함을 줄이기위해

투자촉진법 불교년 2520년 11항, 13항, 20항에 의거하여 투자촉진위원회의 이사회는 권한에 따라 투자촉진에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함

1. 법인세 면제와 관련된 권리와 혜택을 받는 투자촉진을 받는 사업 또는 법인세 면제를 받는 회사나 파트너쉽은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는 법인 신고서(P.N.D. 50) 및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서(P.N.D. 1 Kor)로 전자형식으로서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데 동의해야하며 이는 이사회가 투자촉진을 받는 기간동안으로 2021년 9월 1일 이후어야함
2. 법인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 투자촉진을 받는자는 법인 신고서(P.N.D. 50) 및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서(P.N.D. 1 Kor)로 전자형식으로서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데 동의해야하며 진행하고있는 프로젝트의 성과 보고 시스템을 화상모니터링(e-Monitoring)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이와같은 형식으로 정보를 제출해야함

2021년 8월 2일에 고시

Duangchai Asawachintachit

(Ms. Duangchai Asawachintachit)

투자촉진위원회 비서장